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0-14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

판 결

사 건 2026고단399 저작권법위반

피 고 인 1. A

2. 주식회사 B

검 사 김아진(기소), 오승은(공판)

판 결 선 고 2026. 9. 22.

주 문

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공소사실의 요지

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,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.

1. 피고인 A

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. 12. 19.경 위 B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'F'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,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4. 3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0-14

1.경까지 위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, 2024. 3. 25.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'G'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,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5. 5. 28.경까지 위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.

2. 피고인 주식회사 B

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.

2. 판단

가. 적용법조: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, 제141조

나. 친고죄: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

다.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: 2026. 4. 20. 제출 처벌불원서

라. 공소기각 판결: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

판사 장윤미 _____